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856호 2023. 7. 19.(수)

선 기관의 장 람

고 시

○ 의령군 고시 제2023-101호 도로명주소 고시 ……………………… 2



■ 발행 : 의령군 ■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 055-570-2740, 행정2740 / FAX 055-570-2709)

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- 10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,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·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19일

의 령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: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5길 17-4 등 2

○ 도로명주소 폐지: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63-13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			
별 지 참 조							
폐지 도로명주소			폐지일자	폐지사유			
별 지 참 조	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(☎055-570-2440)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O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페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 로 명 부여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498-2	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5길 17-4	2023-07-19	법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다섯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
2	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959-5	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63-13	2023-07-19	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임진왜란때 일어난 의병을 기리기 위하여 명명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역

NO	폐지 도로명주소	고 시 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의병로 263-13	23-07-19	건물 철거 후 신축